

정책토론회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2019년 9월 27일(금)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2층)

◆ 주최 :  국회의원 김병욱

kiri 보험연구원



금융위원회 비영리사단법인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Senior Financial Education Council



정책토론회 - 제1주제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강성호
2019.9.27
정책토론회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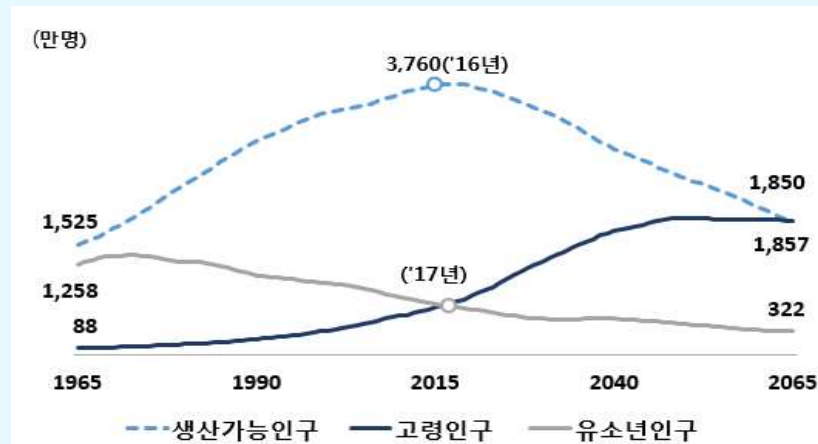
- I. 고령화와 환경변화
- II. 노후준비 인식과 실태
- III. 노후소득보장체계와 대응방향

I. 고령화와 환경변화

1. 고령사회 도래와 급속한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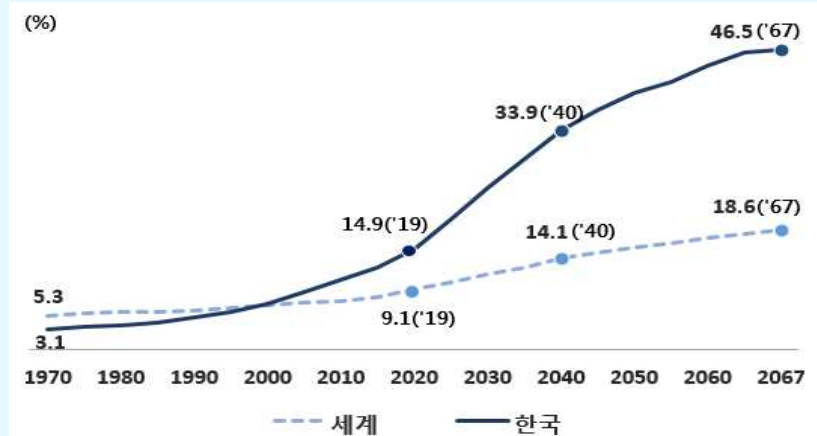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17년 8월 고령화율이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에 진입('18년 738만명, 14.3%)
 - 2017년에 고령인구는 유소년 인구를 초과, 생산연령인구는 감소 시작
-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00년 경에 세계 평균을 초과한 후 급속히 증가하여 격차가 확대
 - (우리나라) '19년 14.9% → '40년 33.9% → '67년 46.5% ('20년, 베이비부머 고령진입)
 - (세계) '19년 9.1% → '40년 14.1% → '67년 18.6%

연령계층별 인구 구조, 1965-2065년(중위)



자료: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2015년~2065년」, p9.

우리나라와 세계의 고령화율 비교



자료: 통계청(2019),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 (고령화 원인) 장수화와 저출산

- (장수화) 기대수명은 1970년 61.9세→2014년 82.4세, 20.5세 증가 (연 0.47세 증가)
 - 1970년~ 2014년 동안 증가한 기대여명은 65세는 8.5세, 70세는 6.9세, 80세는 4.6세
 - * (유병장수) 60세 이상 자의 67%가 만성질환보유(60대 60.7%, 70대 74.2%, 80세 이상 76.54%)
- (저출산) 우리나라 합계출산률은 주요국에 비해 낮고, 특히 2018년 0.98명

기대수명 및 고령자 기대여명				
(단위: 세)				
연도	0세(기대수명)	65세	70세	80세
1970	61.9	12.4	9.8	5.1
1980	65.7	12.9	10.1	5.3
1990	71.3	14.5	11.2	6
2000	76	16.6	13.1	7.4
2010	80.8	19.7	15.8	9.1
2014	82.4		16.7	9.7
	(20.5)	(8.5)	(6.9)	(4.6)

자료: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2015년~2065년」, 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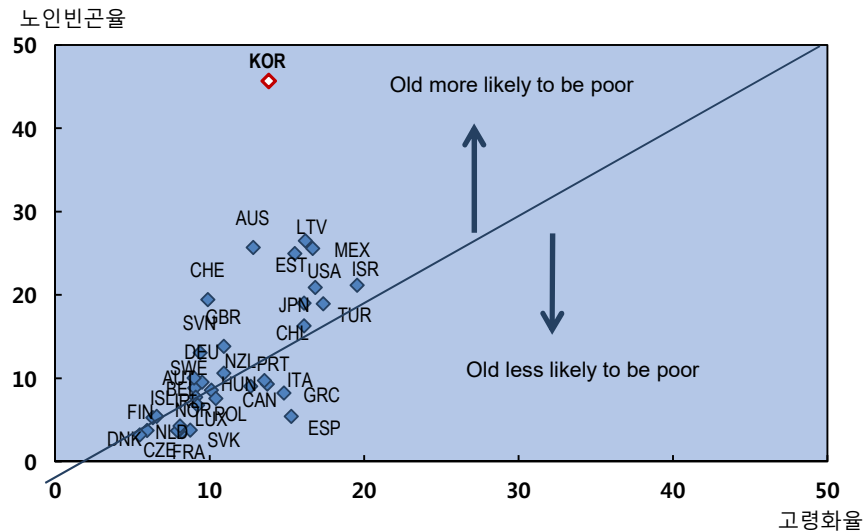
합계출산률 국제비교						
(단위: 명)						
국가별	1970	1990	2010	2020	2040	2060
한국	4.7	1.6	1.2	1.3 '18년(0.98)	1.6	1.7
중국	6.3	2.7	1.6	1.6	1.7	1.8
일본	2	1.7	1.3	1.5	1.7	1.7
캐나다	2.6	1.6	1.6	1.6	1.6	1.7
미국	2.5	1.9	2.1	1.9	1.9	1.9
프랑스	2.6	1.8	2	2	2	1.9
독일	2.4	1.4	1.4	1.5	1.6	1.7
스웨덴	2.2	1.9	1.9	1.9	1.9	1.9
영국	2.6	1.8	1.9	1.9	1.9	1.9

자료: kosis/합계출산율

3. (영향: 가계) 노인빈곤 심화, 노년부양 부담 증가

-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인 45.7%(2015)
 - 주요국의 노인빈곤율은 일본 19.0%, 영국 13.8%, 미국 20.9%, 독일 9.5% (OECD 12.5%)
-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인인구수)는 '18년 19.6명 ('60년 82.6명)
 -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 당 노인인구수)는 '18년 110.5명 ('60년 434.6명)

고령화율 (X축) vs. 노인빈곤율 (Y축)



자료: OECD (2017) Pension at a glance

노년부양비/노령화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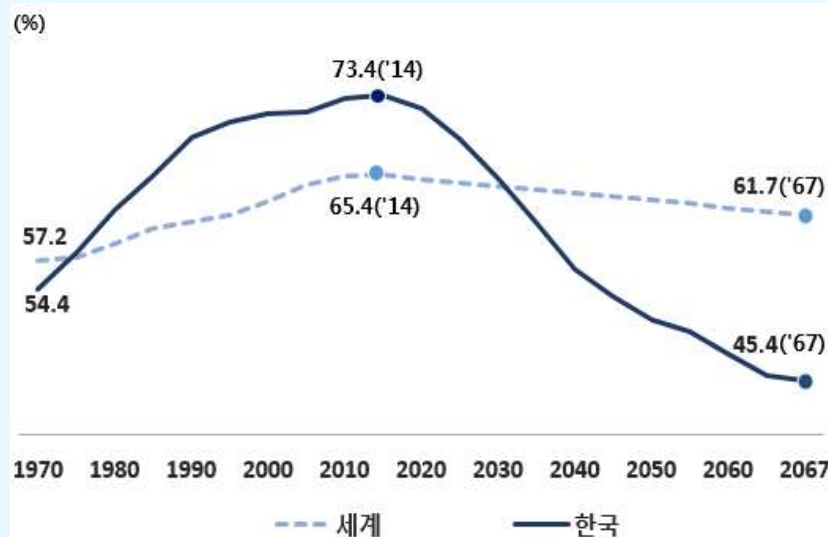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6), 「인구주택총조사」, 「장래인구추계」,

3. (영향: 산업) 생산성 저하, 고령친화 산업 성장

-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14년 73.4%로 정점('17년부터 생산연령인구 수 감소, 향후 연평균 30만 명 급감)
 - 세계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14년 65.4%, 완만하게 감소하여 '67년 61.7%
-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함께 경제성장 등 경기변수는 지속적으로 둔화
 -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 9.0% → 2000년대 4.2%, 실질투자증가율은 동기간 14.0% → 2.6%

우리나라와 세계의 생산연령인구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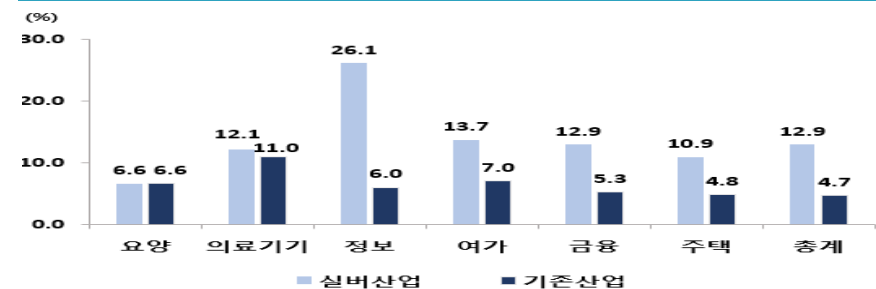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9),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생산연령인구와 경제변수 변화의 관계

구분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10
경제성장률	9.0	9.7	6.5	4.2
생산가능인구(15-64세) 증가율	3.1	2.3	1.3	0.7
실질투자 증가율	14.0	12.5	4.9	2.6

자료: 이진면 외(2012), 고령화를 고려한 중장기 산업구조 전망, 산업연구원

고령친화산업 연평균 성장률 전망(201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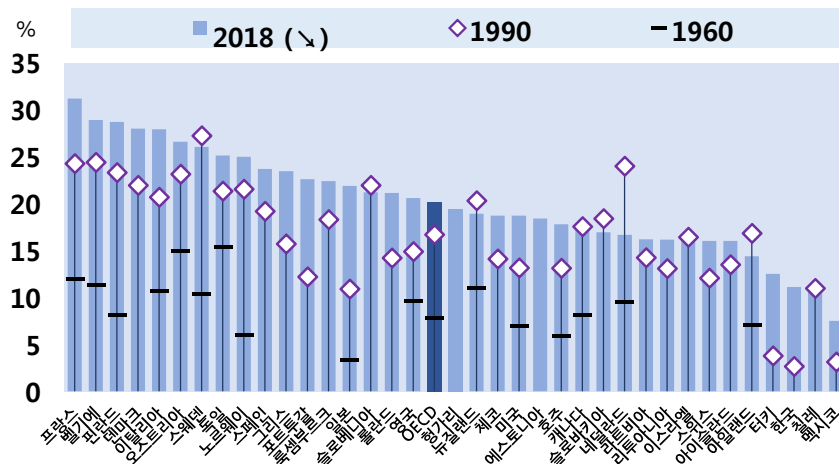


자료: 장동구(2011), 고령화사회 진입이 금융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3. (영향: 정부) 복지재정 악화 및 재정여력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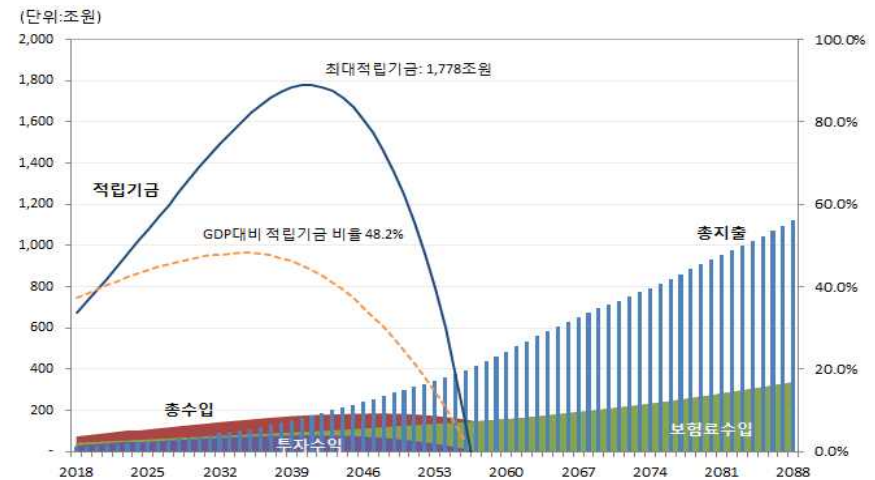
- 노인빈곤과 복지욕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의 도입, 확대로 복지재정 부담 증가
 - GDP 대비 복지지출비중: '90년 3~4% → '14년 10.4% (동기간 OECD는 19~19% → 21%)
- 국민연금은 두 차례의 재정개혁(1998년, 2007년)을 추진하였으나, 재정불안은 여전
 - 3차 재정계산('13년)시 기금소진시점이 '60년이었으나, 4차 재정계산('18년)에서는 '57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



자료: OECD(2016), <http://www.oecd.org/els/soc/expenditure.htm>

국민연금 제4차(2018년) 재정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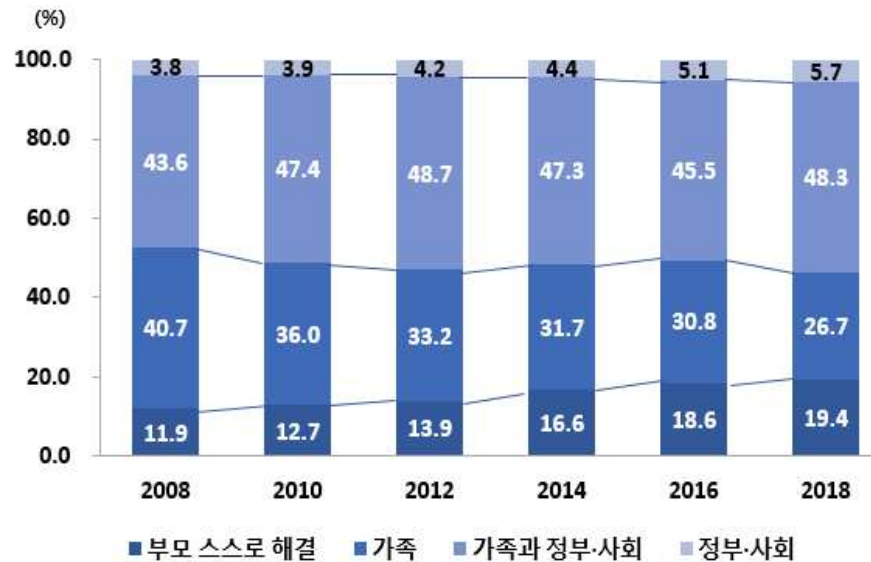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2018),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

II. 노후준비 인식과 실태

1. 노후준비 인식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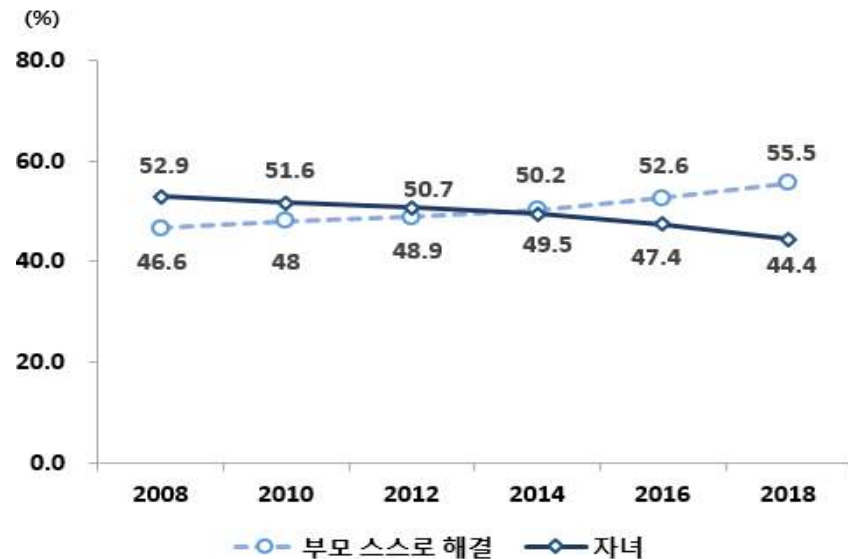
- 부모부양의 책임을 가족 부양에서 가족, 정부, 사회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이 전환
 - 가족 책임인식 감소: '08년 40.7% → '18년 26.7% (14%p 감소)
- 부모에 대한 생활비 주 제공자는 '부모님 본인', 즉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전환
 - '부모 스스로 해결': '08년 46.6% → '14년 50.2% → '18년 55.5%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2018)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



자료: 통계청(2018), 2018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2. 노후준비 실태

- 가계의 현 노후준비 실태도 불안하나, 미래세대의 노후도 우려되므로 미리 대비할 필요
 - 현재 준비상태는 미흡하고, 준비도 늦음
 - 준비된 노후자산은 주로 부동산 등 비유동성

미흡한 노후준비

- 50대 : 부정 42.6%, 54세~59세 : 부정 39.8% (보험연구원, 2015)
- * 노후준비 안 되는 이유: 자녀교육비, 결혼비용 등

늦은 노후준비

- 이상적 은퇴준비 시기: 비은퇴자의 25.3% 취업직후 (삼성생명은퇴연구소, 2014)
- * 현실적 은퇴준비 시기 : 자녀대학 이후 자녀 독립기(50~60대)

노후준비자산의 비유동성

- 50대에서 개인연금 및 저축 비중이 낮음
- * 실물자산 구성비: 30대 61.0%, 40대 69.0%, 50대 74.1%
60세 이상 82.4%

2-1. 노후준비 실태 : 미흡한 노후준비

- 가구주 연령대별 노후준비 상태를 보면, 50대는 노후준비 비율이 79.0%로 높은 편이나, 60세 이상에서는 낮음(54.3%)
 -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이 적은 반면 예적금, 부동산 등으로 노후를 준비
- 은퇴가구와 비은퇴가구 모두 노후준비 정도가 부족
 - (노후준비 부족 비율) 은퇴가구는 59.5%, 비은퇴가구는 53.8%

노후 준비여부 및 방법(19세 이상)					
구분	준비하고 있음	국민연금	예금적금	특수직역 연금 ¹⁾	부동산 운용
2015년	65.3	50.5	21.1	8.1	4.9
2017년	65.4	53.5	18.8	8.8	5.4
19~29세	40.9	60.8	23.3	6.5	0.6
30~39세	73.8	56.9	17.3	8.2	2.5
40~49세	79.5	55.5	16.1	8.0	4.0
50~59세	79.0	58.8	15.4	7.8	5.2
60세이상	54.3	36.9	25.1	13.0	12.6

주 : 1)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자료: 통계청(2017), 2017년 사회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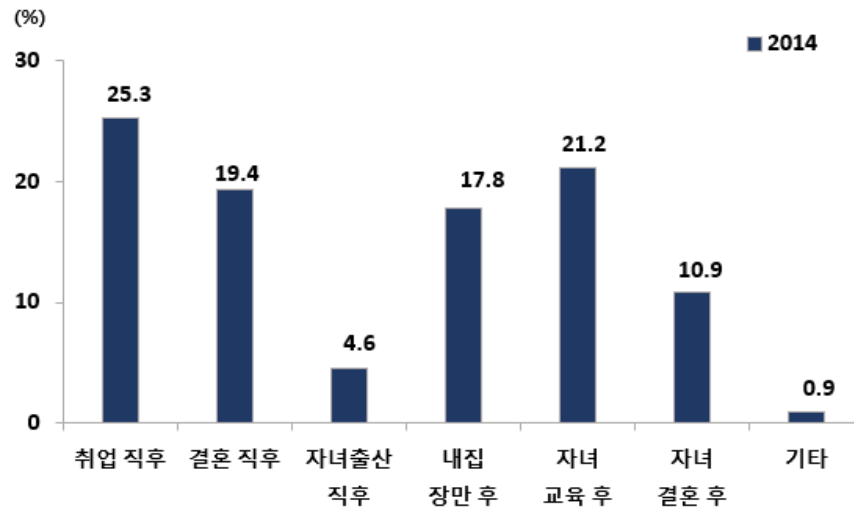
은퇴여부별 노후준비 정도						
구분	실제(예상) 은퇴 연령	노후준비 정도				
		충분함	여유	보통	부족	매우 부족
은퇴 가구	62.5	2.5	8.2	29.8	38.3	21.2
					(59.5)	
비은퇴 가구	67.5	1.7	8.1	36.5	35.7	18.1
					(53.8)	

자료: 통계청(2018),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2. 노후준비 실태 : 늦은 노후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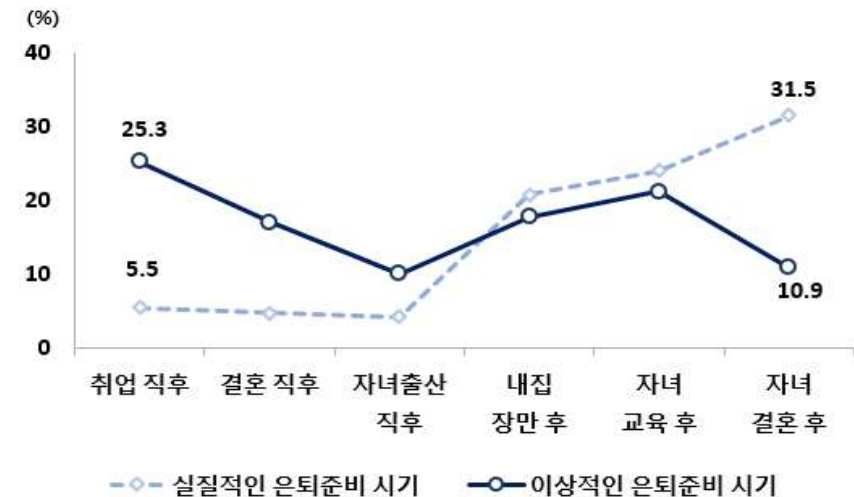
- 이상적 은퇴준비 시작시기는 취업직후, 자녀교육 후 순으로 응답
- 노후준비 걱정시점과 현실 준비시점 간 갭 큼
 - 이상적 은퇴준비 시점은 '취업직후'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실적 은퇴준비 시점은 '자녀결혼 후'
 - * 이상적 은퇴준비 시점은 20~30대, 현실적 은퇴준비시점은 퇴직 전후 시점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4)

이상적인 은퇴준비의 시작 시기



자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2014),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4』, 은퇴백서.

은퇴준비 시기, 이상과 현실의 괴리



자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2014),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4』, 은퇴백서.

2-3. 노후준비 실태 : 유동성 취약, 소득절벽

-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보유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임 : 유동화의 문제
 - 고령화 될수록 부동산 보유율 증가 (50대 73.2%, 60세이상 81.4%)
 - 부동산 보유가구의 62.4%가 부채 보유 (부채보유 이유: 주택 구입, 자녀의 결혼자금 등, 박해식·임진, 2013).
-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는 50대 가구주 가구 소득의 51.5%수준으로 감소(소득절벽)
 - 대부분 근로소득(50대 대비 31.4%), 사업소득(50대 대비 42.7%)의 감소에 기인

가구주 연령별/자산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단위: 명)

구분	자산(A)	금융자산	실물자산	
			(B)	구성비(B/A)
전체	41,573	10,512	31,061	74.7
30세미만	9,906	5,679	4,227	42.7
30~39세	31,059	10,722	20,337	65.5
40~49세	44,322	12,587	31,735	71.6
50~59세	48,021	12,868	35,153	73.2
60세이상	41,202	7,678	33,525	81.4

자료: 통계청(2018),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주 연령별 가구소득 구성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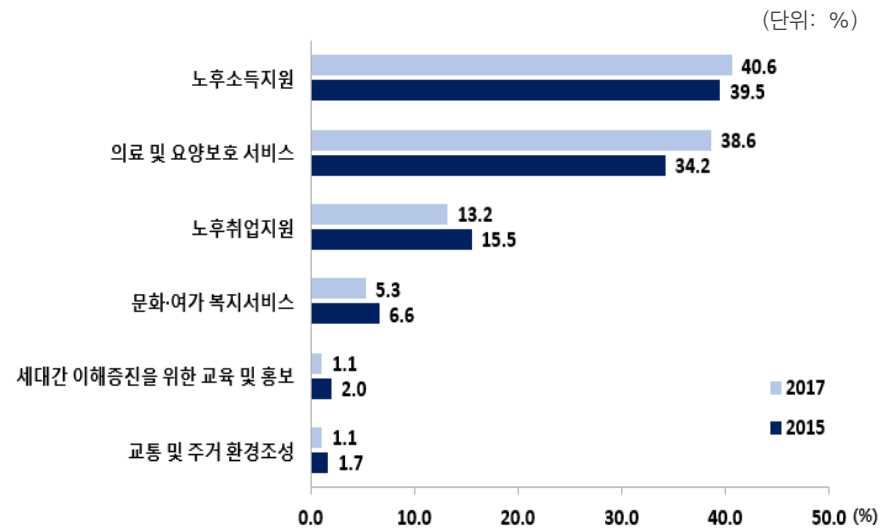
가구주 연령대	가구소득 전체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전체	5,705	3,693	1,244	380	351	91
30세미만	3,533	3,022	275	39	82	116
30~39세	5,756	4,551	910	128	110	57
40~49세	7,107	5,003	1,664	290	115	35
50~59세	7,292	4,882	1,790	415	161	44
60세이상	3,758	1,533	765	533	753	175

자료: 통계청(2018),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3. 노후를 대비한 연금시스템 구축

- 고령자는 부족한 노후준비를 충당하는 수단으로 소득형태의 지원을 원함
- 한편, 은퇴 후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후생활수단으로 연금소득을 선호함
 - 공적연금(41.3%)과 사적연금(21.3%)을 다른 소득원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함(60세 이상, 사적연금 중요)
- 향후 노후준비는 지속적으로 소득흐름이 보장되는 연금소득으로 준비할 필요

노후를 위한 사회적 관심사 (65세 이상)



자료: 통계청(2018), 사회조사 결과

은퇴 후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후생활수단(1순위)

(단위: %)

구분	공적 연금	개인 연금	퇴직 (연금)	사적 연금	일반 저축	부동산 관련소득
전체	41.3	13.2	8.1	(21.3)	20.3	11.4
20대	44.3	9.4	11.7	(21.1)	26	6.8
30대	44.5	11.6	8.7	(20.3)	17.8	11.5
40대	41.6	10.2	9.3	(19.5)	22.3	11.8
50대	44.7	11.7	6.8	(18.5)	15.5	14
60세 이상	32.1	22.5	4.7	(27.2)	20.6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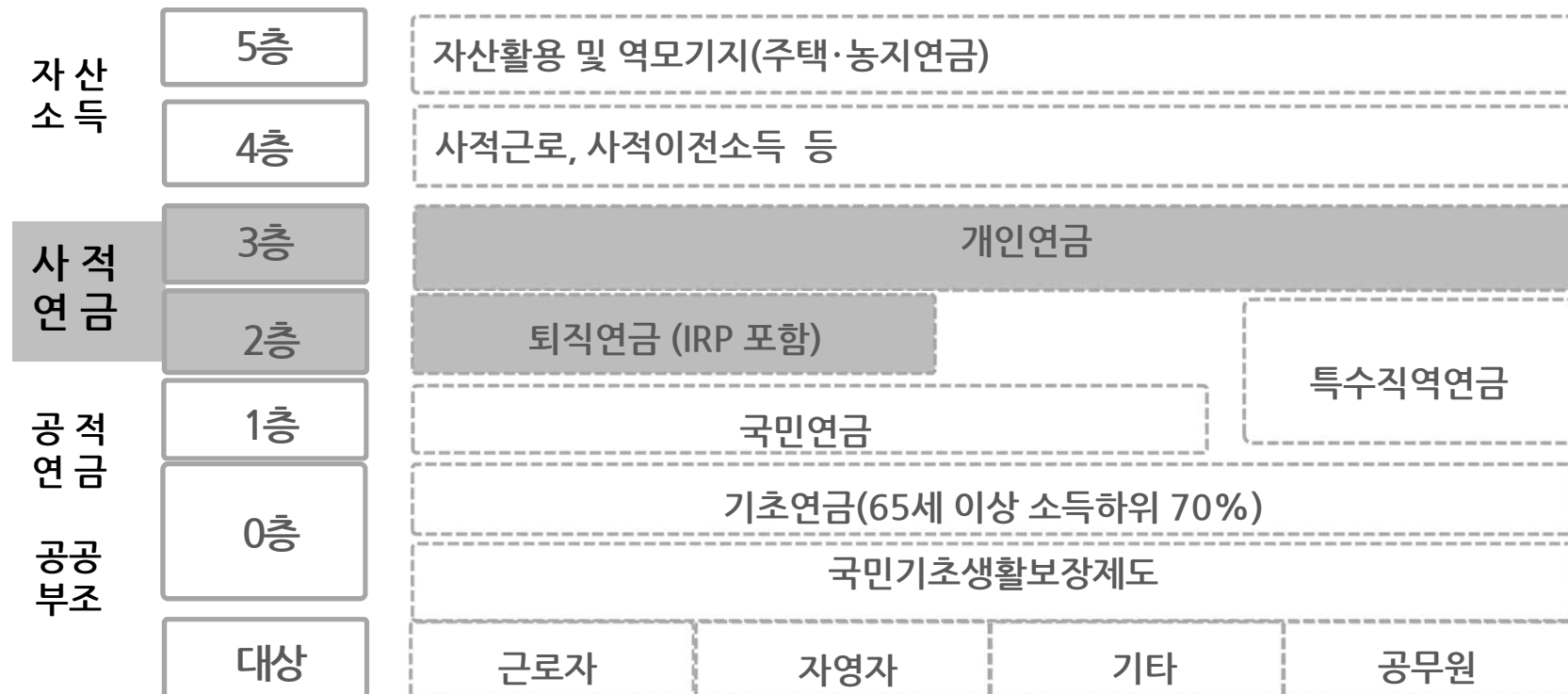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6), 고령화와 노후준비

III.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대응 방향

1. 노후소득보장 체계
2. 대응방향

1. 노후소득보장 체계

- 형식적 측면에서 제도화가 잘 갖추어져 있음
 -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연금, 비연금, 공공부조(조세재원)로 구성
 - 실질적 측면에서는 사각지대, 재정문제, 급여수준의 문제 등 존재



2-1. 국민연금의 한계

- 사각지대가 상당하고 실질적 급여 수준이 낮음
 - (사각지대)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납부자 비율은 2017년 약 78% (OECD 83.6%)
 - * 미국 94%, 영국 88.3%(S2P), 독일 80.9% 등
 - (저급여)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월 51만 원 (소득대체율 21.7%, 2018년)
 - * 국민연금 수급자 수 비율은 2016년 39.4%이나 2030년 50.7%, 2050년 78.8%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적연금 가입률 국제비교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94%('11)	91.6%(BSP), 88.3%(S2P)	80.9%('09)	69.6%('07)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	우리나라
90% 이상	97%(국민), 52%(후생)('10)	99%('08)	78%('17)

공적연금의 낮은 급여수준

- 법정 소득대체율 감소 : 70%→60%→40%(2028)
 - 가입기간이 짧아 실질 소득대체율은 더 낮음
- 현 국민연금연금액의 국제비교
 - 노령연금수급자 평균연금액의 A값 대비 소득대체율은 약 21.7% 수준(A값 235만 원, 평균수급액 51만 원)
 - 선진국의 실수급액과 비교하면, 짧은 제도적 역사와 높은 사각지대 등으로 인해 낮은 수준

2-2. 국민연금의 한계

- 저부담·고급여의 제도구조적 문제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재정안정성 문제 존재
 - (제도구조적 문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수익비 1.8배 (OECD : 19.6%, 42.1%)
 - (사회경제적 요인)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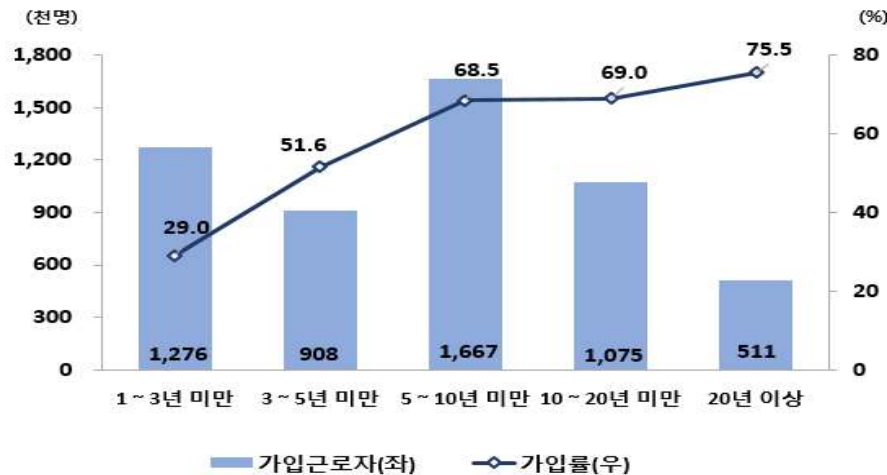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문제		보험료율, 급여수준, 배율의 국제비교		
재정추계 (4차 재정계산)	• 2042년 당기적자 • 2057년 기금소진	구분	한국	OECD 34
불안요인	• 저부담, 고급여 체계 • 저출산, 고령화	보험료율	9.0%	19.6%
대책	• 보험료율 인상 • 소득대체율 인하	급여수준	40%	42.1%
		배율	4.4 배	2.2배

자료: OECD(2017), Pensions at a Glance.

3-1. 퇴직연금의 한계

- (가입) 퇴직연금의 가입률과 유지율이 낮아 퇴직연금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취약
 - 퇴직연금 가입률 50.2% (2017년), 근속기간 적을수록 가입률 낮음(1~3년 29.0%, 20년 이상 75.5%)
 - * 중도인출 허용하고 55세까지만 강제 가입하여 유지율 낮음
- (수급) 퇴직연금은 주로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연금수령하더라도 연금수령기간이 짧음
 -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중 일시금 선택 97.9% (2018년), 5년 수급기간이 가장 많음

(퇴직연금) 근속기간별 가입현황 (2017년)



자료: 통계청 (2018), 2017년 하반기 및 연간 퇴직연금통계

퇴직연금의 수급형태별 수급 현황

(단위: 좌,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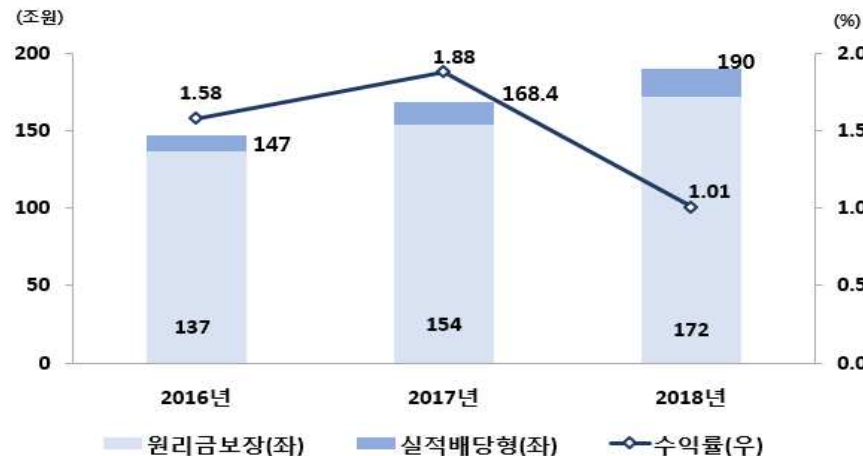
구분	계좌수 (비중)	금액 (비중)
연금수령	6,145	12,643
	(2.1)	(21.4)
일시금 수령	290,227	46,359
	(97.9)	(78.6)
합계	296,372	59,002
	(100)	(100)

자료: 금융감독원(2018), 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3-2. 퇴직연금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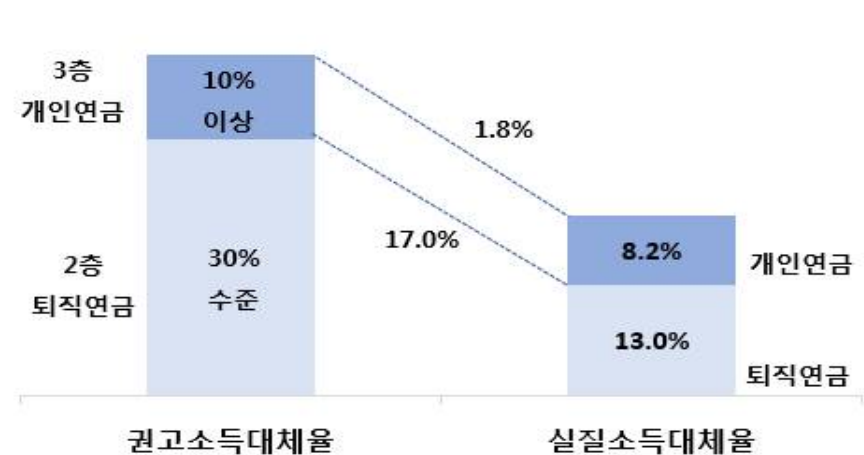
- (저수익) 2018년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총비용 차감 후)은 1.01%로 나타남
 - 원리금보장형에 많이 투자된 점도 있으나, 실적배당의 수익도 높지 않거나 불안정
 - * 실적배당형의 수익률 `17년 6.6%, `18년 -3.82%
- (저급여)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연금화 전환이 미흡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
 - 퇴직연금을 충실히 가입(가입기간 30년)하는 것을 가정한 소득대체율은 13.0%로 추정
 - 실업, 조기퇴직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이에 훨씬 미달할 것으로 예상

최근 3년간 퇴직연금 적립금 및 수익률



자료: 금융감독원(2018), 2018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주: 사적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은 2012년 기준, 개인/퇴직연금수익률은 협회홈페이지 참조
자료: 류건식(2013)

4. 개인연금 활성화로 대응할 필요?

- (공적연금 한계) 재정문제,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 시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에 한계
 - 적정노후소득 수준 달성을 위해 공사역할 분담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필요
 - 적정노후소득 수준을 70%의 소득대체율로 가정(OECD) 하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 30~35%(기초연금 10% 포함)로 예상되나,
법정소득대체율인 40%에도 미달함
- (퇴직연금 한계) 임금근로자 중심, 연금화 문제 등으로 현실적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낮음
 - 자영자, 공무원 등 가입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임금근로자 중심
 - 퇴직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이 13%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합산할 경우 43%~48%
- (부족한 노후소득 수준) 목표 소득대체율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2%~27%가 부족
- (개인연금 활성화) 무엇으로 이를 달성할 것인가? 개인연금 활성화가 중요해지는 시점임!!!

감사합니다.

정책토론회 - 제2주제

개인연금보험 활성화 방안

발표자: 김세중 연구위원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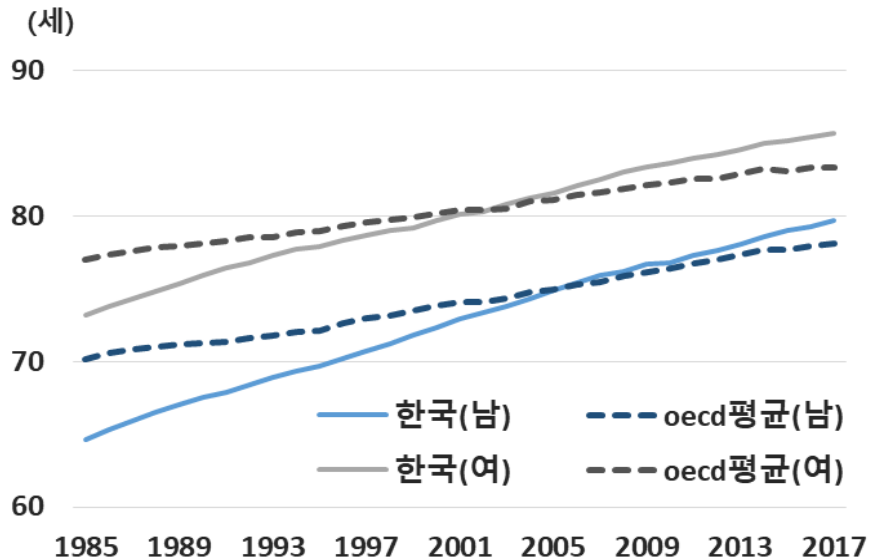
- I. 개인연금보험, 왜 필요한가?
- II. 개인연금보험 현황 및 문제점
- III. 개인연금보험 공급위축 해소 방안
- IV. 개인연금보험 수요 촉진 방안
- V. 맺음말

I. 개인연금보험, 왜 필요한가?

1. 노후소득 확보 필요성

- 기대수명 증가와 가구구조 변화로 노후소득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음
 -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은퇴 후 생존기간 연장으로 노후소득 확보 필요성 증가
 - 1~2인 가구 비중 증가로 위험보장 니즈가 사망보장에서 노후소득보장으로 전환
 - 한편, 세대간 부양의식 약화로 가족을 통한 노후소득 감소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확보가 어려워, 추가적인 노후소득 확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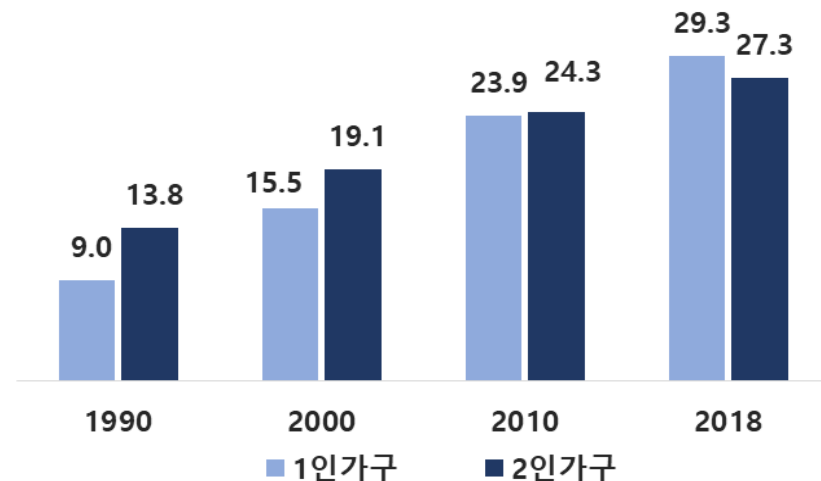
남녀 기대수명 추이



자료: OECD

1~2인 가구 비중 추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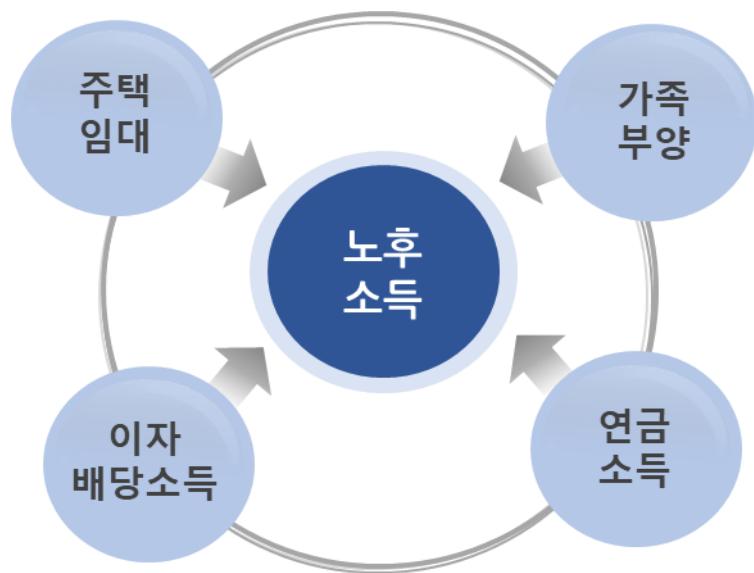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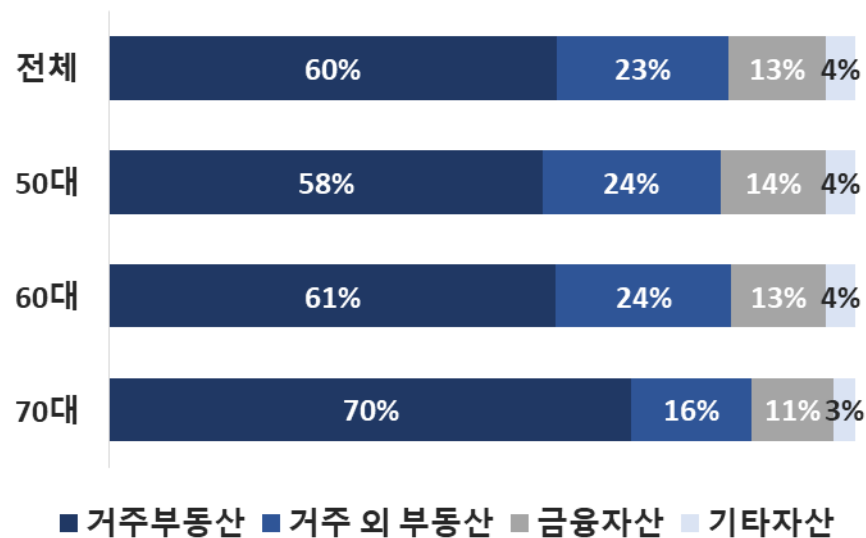
2. 다양한 노후소득 확보 수단

- 노후소득확보 수단은 개인연금보험 이외에도 부동산임대, 이자 및 배당 소득, 가족부양 등 다양함
 -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소득 확보 수단 중 부동산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노후소득에 대한 니즈가 연금수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연금보험만의 경쟁력이 필요함

노후소득 확보 방법



은퇴가구의 연령별 총자산



자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8 은퇴백서

3. 개인연금보험의 경쟁력

- 개인연금보험은 사망 시까지 안정적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써 개인의 장수위험을 관리하는 직접적인 수단임
 - 종신연금 이외에도 “100세까지” 혹은 “25년 동안” 등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가능
 -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사망 및 질병보장을 제공함
 - 단순 저축상품 보다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짐

개인연금보험의 종류

- 세제적격 연금저축 : 납입액 400만원 한도에 대해 13.2% 또는 16.5%의 세액을 환급
-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 변액연금 : 투자형 연금상품임

연금 수령 방식

- 일시금,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중 선택 가능 (손해보험은 최장 25년)
-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생활자금 인출 가능
-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간의 혼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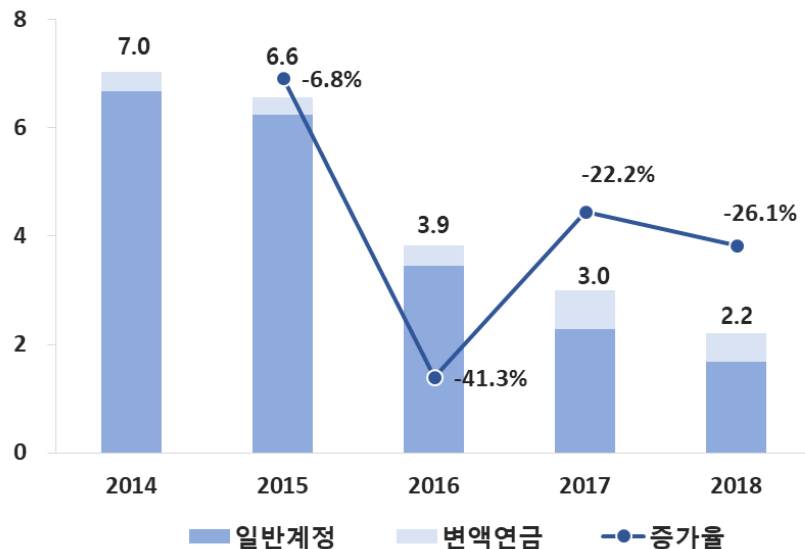
II. 개인연금보험 현황 및 문제점

1. 개인연금보험 시장 위축

- 노후소득 확보 수요 증가와 개인연금보험의 위험보장 기능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보험 시장은 크게 위축되고 있음
 - 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험 신규판매(초회보험료)는 2014년 이후 크게 감소하면서 2018년 1/3 수준으로 급감함
 - 수입보험료 또한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22.3%가 감소함

개인연금보험 초회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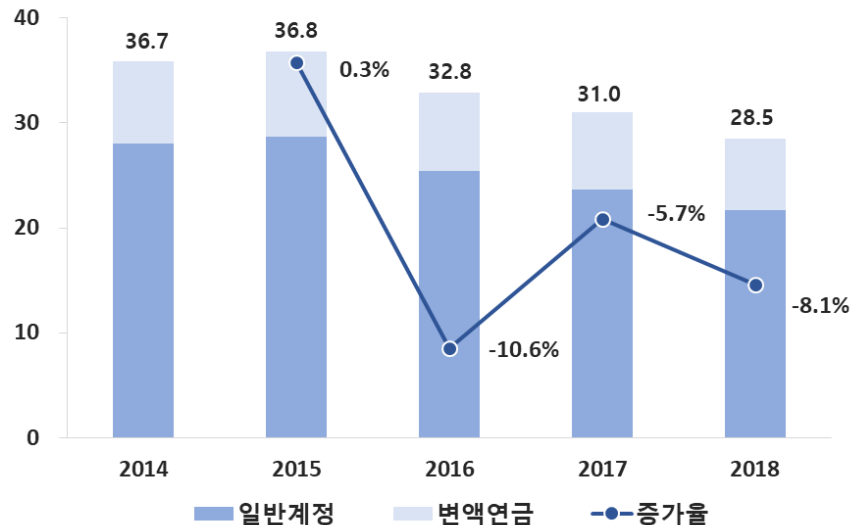
(조원)



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산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개인연금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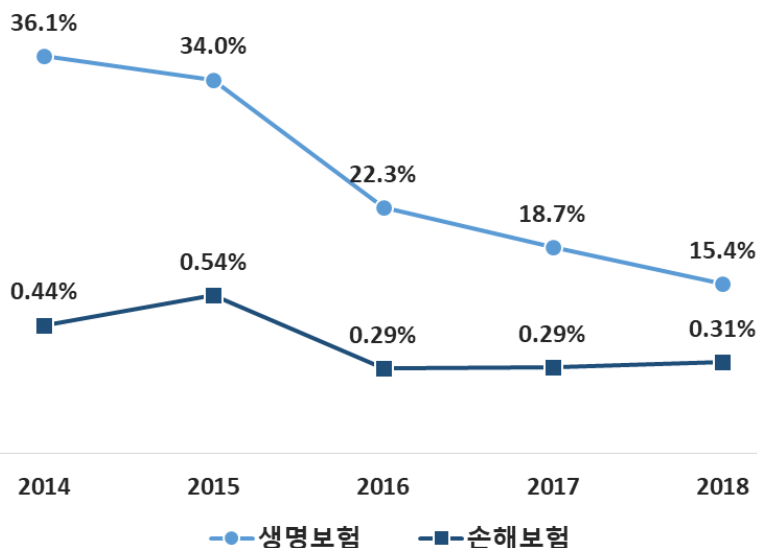


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산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2. 개인연금보험 판매비중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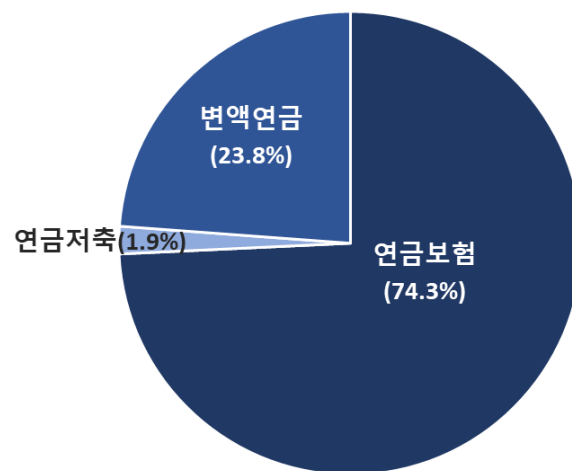
- 개인연금보험 시장 위축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내 개인연금보험 비중 또한 감소함
 - 생명보험의 경우 2014년 36.1%에 달하던 개인연금보험 판매 비중이 2018년 15.4%로 크게 감소함
 - 손해보험의 경우 개인연금보험 판매 비중이 미미하지만 2014년 이후 감소함
 - 한편, 전체 개인연금보험 판매 중 74.3%가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고 23.8%가 변액연금이며, 연금저축 비중은 1.9%에 불과함

생손보 개인연금보험 판매비중 추이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개인연금보험 초회보험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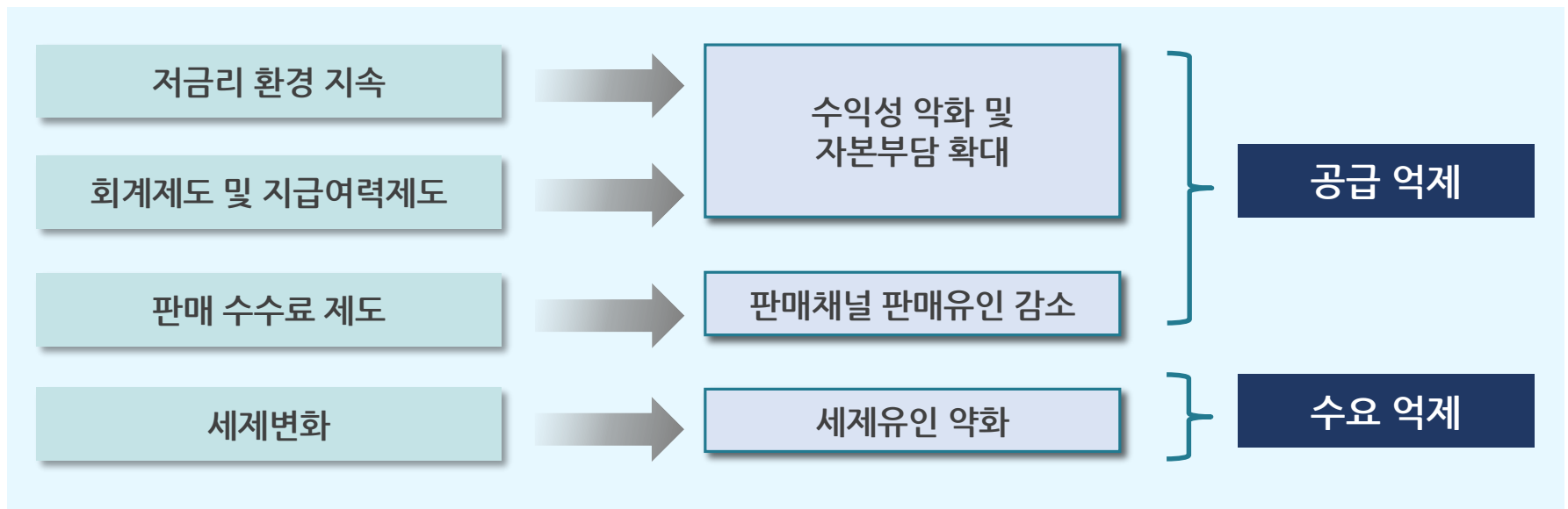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3. 제도환경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원인

-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수수료 제도 및 세제 변화,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 등의 제도환경적 요인들이 개인연금보험 공급을 억제하고 있음
 - 공급측면에서는 수익성 악화, 자본부담 확대, 판매채널 판매유인 감소 등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함
 - 세제유인 약화로 인한 수요측면의 요인도 작용함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



3-1. 개인연금보험 수익성 악화, 자본부담 확대

저금리 환경

개인연금보험의 주 수익원인 이자율 차익이 감소하여 타 보험상품 대비 수익성 악화

- 저축성 보험이므로 보장성보험과 달리 위험률 차익이 적고 이자율 차익이 주 수익원임
- 7년 내 원금 보장 규정에 의해 사업비도 축소됨
- 개인연금보험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 판매에 주력함

IFRS17

IFRS17에서 저축성보험은 매출로 인식되지 않으며, 보험회사의 자본 변동성 확대

- 보험상품의 저축부분은 매출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의 판매는 매출규모 확대 없이 부채만 증가함
- 부채 평가시점의 가정을 이용하여 부채를 시가평가하기 때문에 확정금리형 또는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제공하는 저축성상품 비중이 높을 경우 자본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

K-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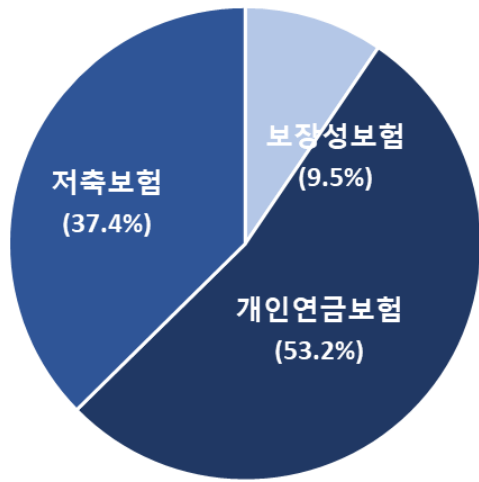
리스크 측정방식 정교화로 금리위험 부담이 커지고, 장수위험 요구자본 추가

- 보험부채의 최대 잔존만기를 제한하지 않고 실제 잔존만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개인연금보험의 부채 듀레이션이 확대되고 금리리스크 요구자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K-ICS에서는 장수위험이 신규로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요구자본 부담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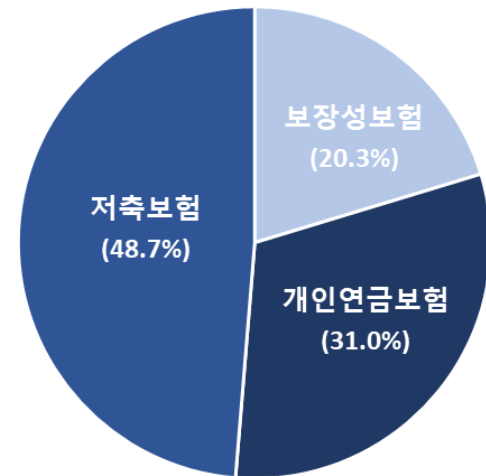
3-2. 보장성보험의 개인연금보험 대체

- 연금전환 종신보험과 같은 하이브리드형 종신보험의 개인연금보험 대체 현상이 심화됨
 - 개인연금보험의 수익성 하락과 자본부담으로 인해 생명보험 개인연금보험 판매비중은 2014년 53.2%에서 2018년 31.0%로 하락한 반면, 보장성보험 비중은 2014년 9.5%에서 20.3%로 비중이 확대됨
 -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수요를 연금기능을 가진 종신보험으로 유도

2014년 생명보험 개인보험 종목별 판매비중



2018년 생명보험 개인보험 종목별 판매비중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3-3. 판매채널 판매유인 약화

- 개인연금보험을 포함한 저축성보험의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는 판매채널의 판매유인을 약화
 - 2014년 이후 저축성보험의 선급수수료율은 축소되면서 보장성보험 등에 비해 판매유인이 약화됨
 - 개인연금보험의 주 판매채널인 방카슈랑스채널의 경우 신계약비 수준을 설계사 채널의 50% 수준으로 제한
 - 7년 내 원금을 보장하는 해약환급금제도는 금리 하락기 수수료 축소 요인으로 작용

저축성보험 판매수수료 분급비중 변화

구 분		2014년	2018년
연금저축보험 분급비율	일반채널	30%	50%
	종신(생존)연금	25%	40%
	방카슈랑스채널	30%	70%
	온라인채널	30%	100%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3.12.27),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저축성보험 상품설계 규정

- 저축성보험의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부리이율로 계산한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의 경우 15개월)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한다.
- 다만,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 및 연금저축보험은 평균공시이율에 0.25%p를 가산한 부리이율로 계산할 수 있다.

3-4. 세제혜택 약화

-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이 축소되면서 소비자의 세제유인이 약화됨
 - 개인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소득계층에서 절세효과가 감소
 -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에 납입액 한도가 추가됨

연금저축 세제혜택 변경

연금저축 납입액 한도 4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되고,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수준이 16.5%와 13.2%로 차등화

연금보험 세제혜택 기준 강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납입액 한도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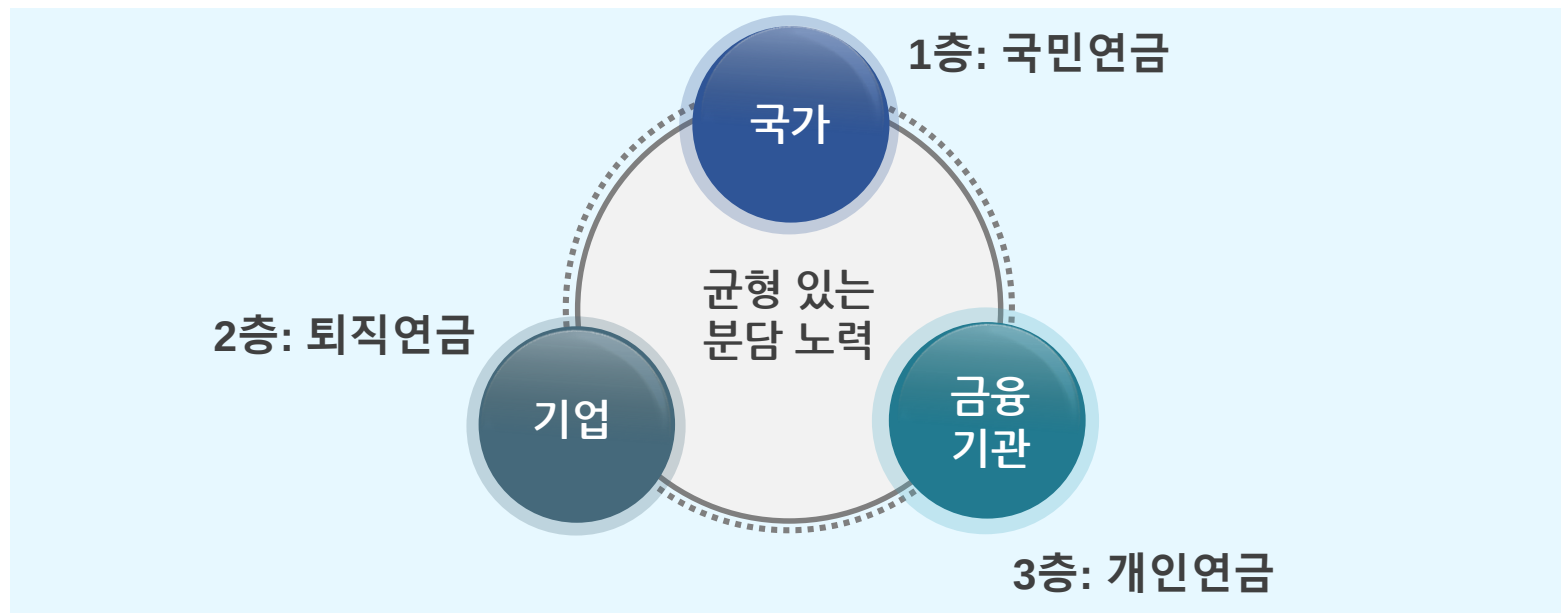


비과세 요건 중 일시납 한도가 1억 원으로
감소하고 월 적립 150만 원 한도
요건이 추가됨

4. 개인연금보험 시장의 수요·공급 불일치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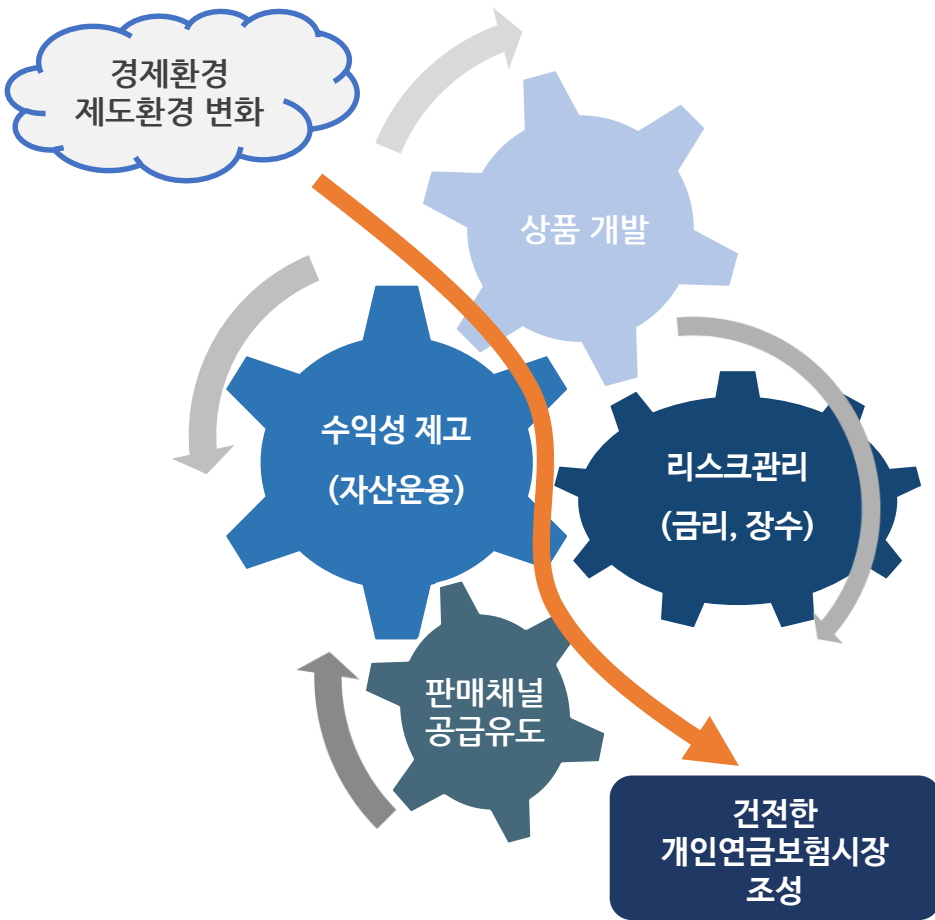
- 기대수명 증가, 가구구조 변화 등의 요인으로 개인연금보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측면에서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개인연금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 개인연금보험은 3층형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적 영역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가지고 있음
- 개인연금보험 활성화는 산업의 문제가 아닌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함

노후소득 사회안전망과 분담주체



III. 개인연금보험 공급위축 해소 방안

개인연금보험 공급 단계별 대응



보험산업 및 정책적 대응 방안

환경변화 이해	국제회계기준과 요구자본제도 변화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
상품개발	- 경제 및 제도 환경 변화를 고려한 신상품 개발 - 소비자의 니즈를 고려한 신상품 개발
수익성 제고	연금상품 설계 및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한 개인연금보험의 수익성 개선
리스크 관리	개인연금보험과 관련한 금리위험과 장수위험 부담에 대응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판매채널	- 판매채널의 판매 유인을 높이기 위한 판매 수수료 구조 고려 - 개인연금보험 판매 특화 채널 육성

1.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 제고

- 국제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 하에서 보험상품 별 영향 정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 필요
 - 개인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보험의 경우 금리변동형 상품이며 최저보증이율을 보수적으로 운용할 경우 자본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음
 - 오히려 높은 예정이율을 지급하는 종신보험, 위험률 측정이 어려운 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과잉경쟁이 부담이 될 수 있음

종신보험 경쟁 심화

- 최근 장기유지 시 환급률이 높은 무(저)해지환급금 보장성보험 판매 증가
- 종신보험의 경우 예정이율이 2.5% 수준으로 저축성보험 최저보증이율의 1% 수준에 비해 높음
- 종신보험 경쟁이 심화 되고 있으나 고이율 보장으로 인한 리스크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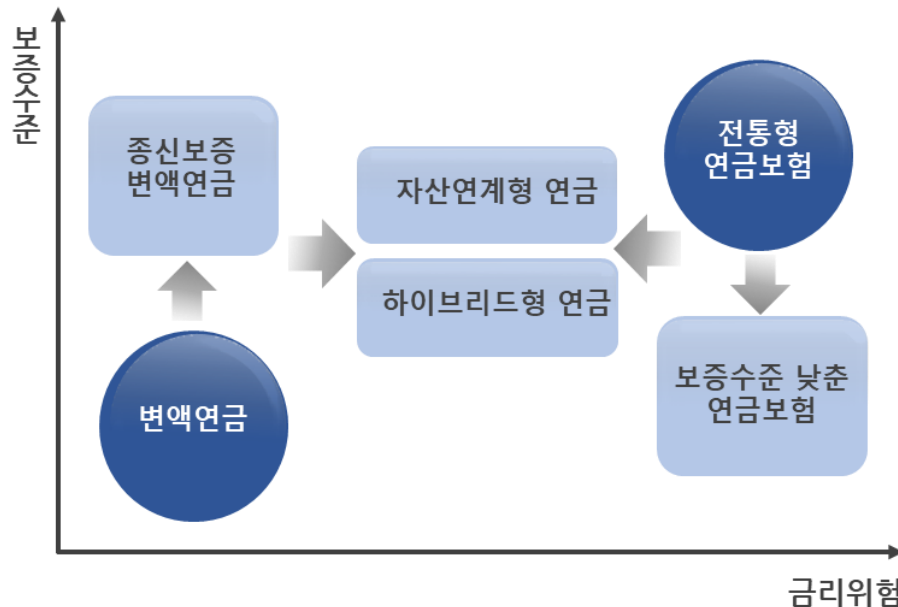
건강보험 경쟁 심화

- 초간편보험, 새로운 암보험, 치매보험 등 건강보험 신상품 판매 확대
- 언더라이팅 간소화, 보장 강화 경쟁 심화
- 무리한 보장성보험 확대 전략이 향후 손해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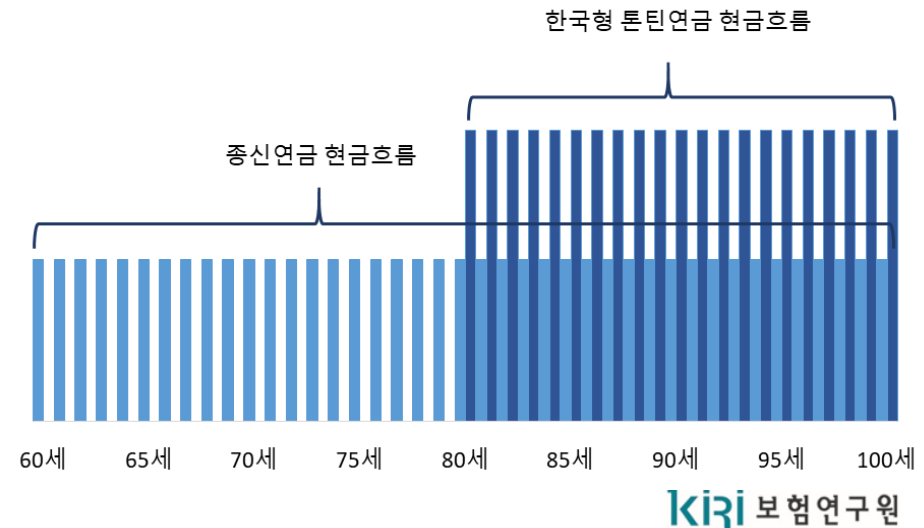
2. 신상품 개발 및 수익성 제고

- 보험회사는 제도변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 공급을 확대해야 함
 - Solvency II 시행 이후 유럽 보험회사들은 금리리스크가 큰 장기 저축성보험 상품 공급을 줄이고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형 상품 및 하이브리드형 상품을 강화함
 -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적고 장수위험 관리에 특화된 한국형 토티연금* 도입 고려
 - * 80세와 같이 고연령에 연금이 개시되며, 연금수령 전 사망자의 적립금이 생존한 계약자의 연금재원으로 활용되는 연금

유럽 개인연금보험 상품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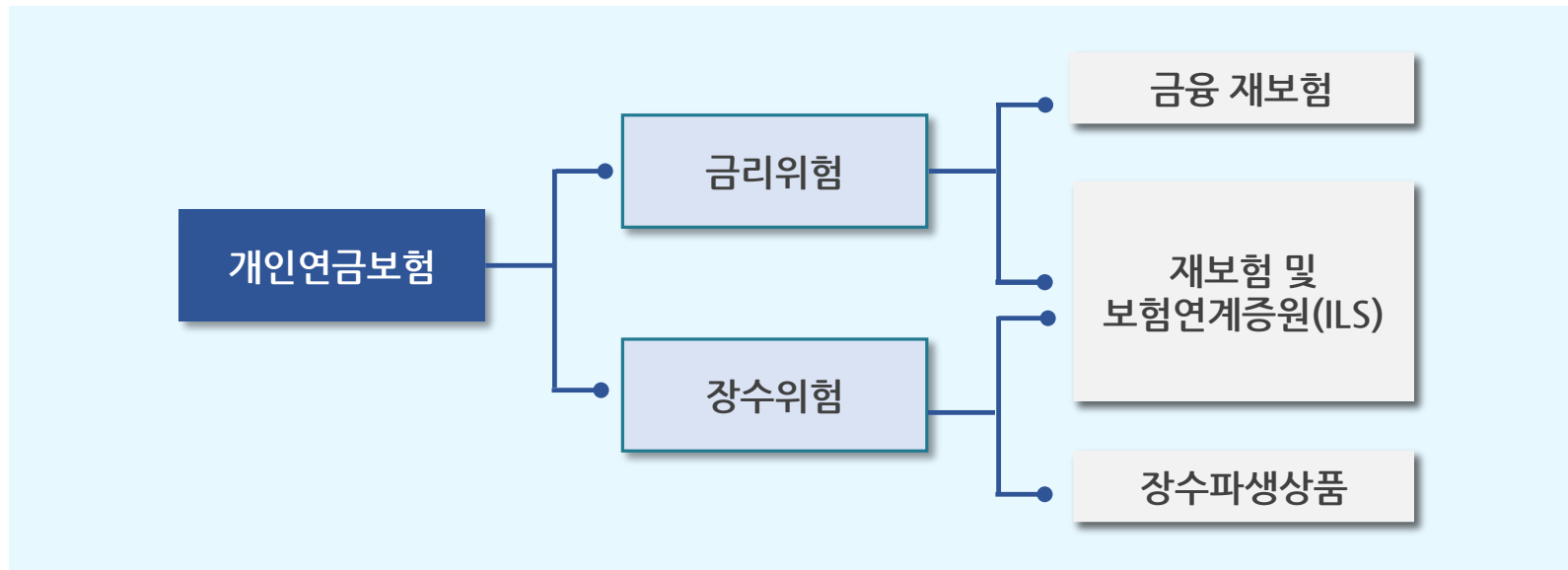
한국형 토티연금 현금흐름



3.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 보험회사는 개인연금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 부담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금리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금융재보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장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장수파생상품에 대한 검토
 - 개인연금보험의 요구자본 부담을 관리하기 위한 재보험 전략에 대한 검토 및 보험연계증권(ILS)활용방안 모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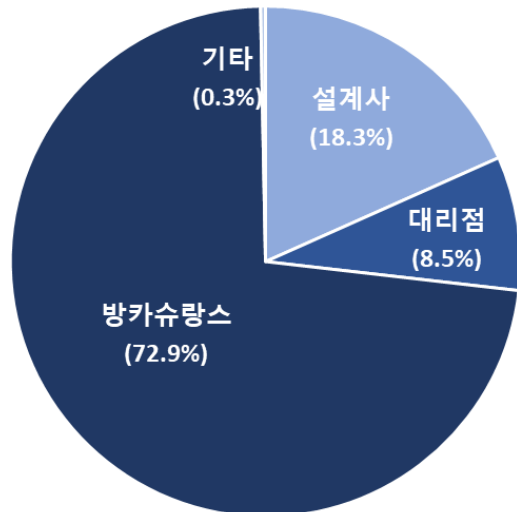
개인연금보험 관련 리스크 관리 수단



4. 판매채널의 공급 유인 확대

- 개인연금보험의 장기 보장기능과 공적 노후소득 보완 기능을 감안한 판매채널 인센티브 제공
 - 판매수수료 축소와 분급확대는 저축성보험의 수익률을 높여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안임
 - 하지만 개인연금보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수료 체계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
- 개인연금보험 주요 판매 채널인 방카슈랑스 채널의 연금판매 인센티브 제공
- 장기적으로 판매규모는 미미하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채널 활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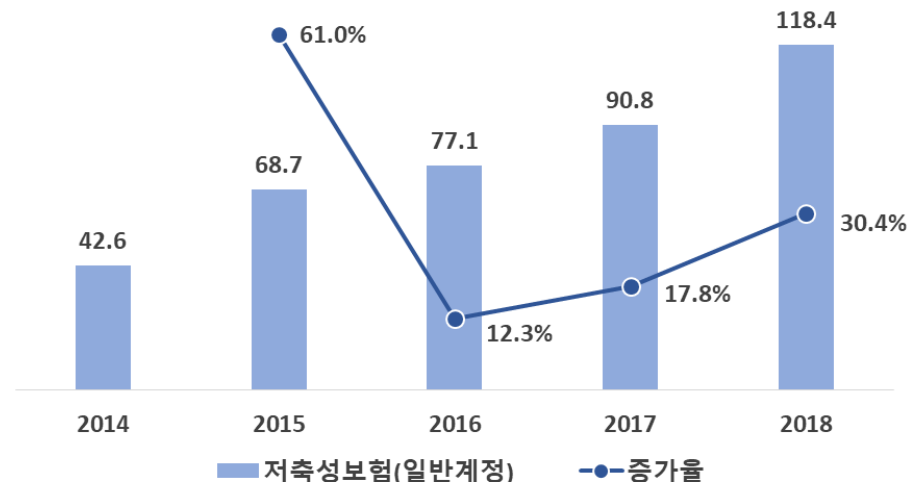
일반계정 개인연금보험 판매채널 비중(2018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저축성보험 온라인 채널 판매 추이

(억 원)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IV. 개인연금보험 수요 촉진 방안

개인연금보험 수요 단계별 접근

- 잠재수요가 실제 개인연금보험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정보전달을 확대

- 가입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세제혜택 확대, 보조금 지급 고려

탐색단계

구매단계

계약유지

연금수령

- 조기해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유지 유도

- 장기연금 수령 시 혜택을 제공하여 장기연금수령 유도

1. 개인연금보험 잠재수요 발굴

-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잠재수요가 실제 개인연금보험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정보전달을 확대
 - 소비자들이 개인연금보험의 장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홍보 필요
 - 수많은 연금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모든 상품을 비교하여 최적의 상품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으며, 따라서 독립된 평가기관을 통해 상위권 연금상품 정보를 제공

독일 리스터 연금 정보제공 사례

- 연금 및 재정계획 연구소(IVFP)는 2001년 설립된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리스터 연금상품 평가 결과를 제공함
 - 수익과 비용, 서비스의 질, 유연성, 투명성 등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 상위 3개 회사를 5개 상품군으로 나누어 발표
 - 예를 들어 사업비의 투명성 항목은 각 사업비 항목이 잘 구분되어 있고 투명한 경우 10점을 부여하고 각 사업비 항목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0점을 부여함
- 보험상품 평가기관 Franke&Bornberg, Stiftung Warentest 등도 리스터 연금상품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자료: 김세중(2019), "개인연금보험상품 비교정보 제공 현황과 과제", 이슈분석, 보험연구원

2. 세제혜택 확대

세제혜택 확대

세제혜택 확대는 직접적인 개인연금보험 수요 확대 요인임

-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납입한도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13.2% ~ 16.5%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세제혜택을 감안할 경우 수익률 측면에서 매우 유리함
- 현재의 세액공제 혜택은 과거 소득공제 혜택에 비해 전반적으로 혜택의 규모가 감소하였고 저소득 과세 미달자의 가입율을 낮추는 부작용이 발생
- 세액공제를 과거와 같은 소득공제로 환원하거나,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개인연금보험 수요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장기유지 및 연금수령을 조건으로 비과세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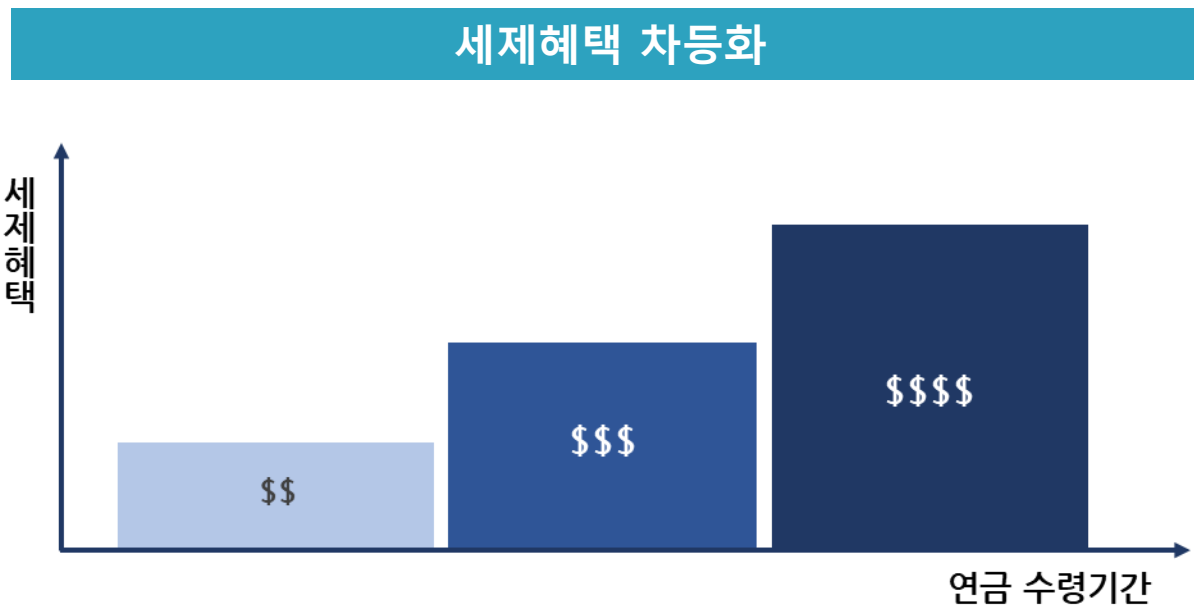
보조금 지급

중저소득층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을 고려

- 저소득층 개인연금보험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의 리스터 연금임
- 공사연계연금을 설계하여 저소득층 공사연계연금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빈곤율 하락을 유도
- 다만 재정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자격과 보조금 규모 등에 대한 신중한 제도설계가 필요

3. 계약유지 및 장기연금수령 유도

- 개인연금보험은 계약유지 및 연금수령을 통한 장수위험 관리가 핵심 기능이므로 보험회사는 유지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개인연금보험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유사연금상품을 권유하는 불완전판매 행위 억제
- 장기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금 수령기간에 따라 세제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 고려
 - 의무연금수령 기간과 세제혜택을 차등화 한 후 가입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V. 맺음말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필요

-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과 함께 연금시장 활성화를 기반으로 개인은 효율적인 장수위험 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개인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개발, 리스크 관리, 연금시장 확대 등 보험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감사합니다.

[별첨1] 개인연금보험 세제혜택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2천만 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5. 13., 2016. 12. 20.>

[별첨2] 저축성보험 수수료 관련 규정

보험감독규정 제7-51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의 50%(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은 4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70%,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100%) 이상을 보험료 납입기간(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은 최소 7년을 말한다)동안 보험료에 균등하게 부가하지 아니한 저축성보험은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험감독규정 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3항 저축성보험의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부리이율로 계산한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의 경우 15개월)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 및 연금저축보험은 평균공시이율에 0.25%p를 가산한 부리이율로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